

창원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1184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구하는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을 상회하던 적극재산의 대부분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뀐 이상 사해행위를 인정함에 의문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공장을 넓은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 알아보던 중 때마침 소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및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이동경로(C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별지